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250

발의연월일: 2022. 12. 29.

발 의 자:소병훈·강득구·고영인

김승남 • 박 정 • 안호영

어기구 • 윤준병 • 인재근

임종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재응시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위법행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권자를 농촌진흥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치유농업서비스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 년간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치유농업사 양성

기관 지정권자를 농촌진흥청장으로 일원화하며,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3조, 제15 조 및 제16조 신설 등).

법률 제 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형"을 "실형"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를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농촌진흥청장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지방농촌진흥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농촌진흥청장은"으로 한다.

제6장을 제7장으로 하고, 제5장을 제6장으로 하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5장(제15조 및 제1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치유농업서비스 이용 기반 조성

- 제15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서 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1. 제1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제2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을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인증의 취소 등) 농촌진흥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7조(종전의 제1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 제18조(종전의 제16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가"를 "농촌진흥청장 장이"로 한다.

②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유농업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 ② (생 략)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자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 이상의 <u>형</u> 을 선고받고	2 <u>실형</u>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u>집행</u>	<u></u>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
	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u>농촌진흥청장 또</u>	지정 등) ① <u>농촌진흥청장은</u>
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다)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u>신</u>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제14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지 ① <u>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u> <u>지사는</u>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 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해당하는 기관</u>
1. 지방농촌진흥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
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
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u>농촌진흥청장은</u>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신 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5장 치유농업서비스 이용 기반

조성

- 제15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 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 진흥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 증을 신청할 수 없다.
 - 1. 제1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 2. 제2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 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 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

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러의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인증의 취소 등) 농촌진흥 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 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 설>

제5장 보칙

제15조(청문) 농촌진흥청장은 다 제17조(청문)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 여야 하다.

1. • 2. (생략) <신 설>

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 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 위임할 수 있다.

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6장 보칙 1. • 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

② · ③ (생 략) <u>제6장</u> 벌칙

<u>제17조(벌칙)(생</u>략)

<u>제18조</u>(과태료) ① (생 략)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 가 부과·징수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제7장 벌칙

<u>제19조(</u>벌칙)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2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
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u>③</u>	제1항	및	제2항		
		농촌	진흥청]장이	

----**.**